

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 (제9조제2항 관련)

근거 법령	사업	수립 시기
「택지개발촉진법」	택지개발사업	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. 다만, 개발면적이 330만㎡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「주택법」	주택건설사업	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·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
	대지조성사업	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	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
「도시개발법」	도시개발사업	1.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: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2.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.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있는 날
「관광진흥법」	관광지조성사업	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

	관광단지조성사업	성계획승인 이전까지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	유원지설치사업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
「온천법」	온천개발사업	「온천법」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
「자연공원법」	공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: 「자연공원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·고시 이전까지 -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: 「자연공원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(법률 제 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「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)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	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	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